## 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제도 특별약관

## 제1조 (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)

- ① 이 특별약관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(이하 "전환전계약"이라 합니다.)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21년 7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(계약전환용)(이하 "전환후계약"이 라 합니다.)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별도 심사없이 전환합니다.
  - 1. 보장종목 : 상해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질병담보를 가입하고자 하거나 질병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상해담보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
  - 2. 전환전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지 않은 경우
  - 3. 전환청약을 철회하여 전환전계약으로 환원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
  - 4. 전환후 계약에서 신규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전환 신청 직전 최대 1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    - 1) 입원 2) 수술 3)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)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
- ② 제1항의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.

### 제2조 (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및 공제내용 등)

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합니다.

다만, 전환후계약과 전환전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하여 드립니다.

#### 제3조 (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)

- ① 회사는 전환후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전환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전환일부터 전환전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## 제4조(계약전환 청약의 철회)

- ①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(청약의 철회)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,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합니다.

#### 제5조 (계약전환의 무효)

전환후계약이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날부터 제3조(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)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, 전환전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.

- 1. 전환후계약의 청약이 철회된 경우
- 2.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 "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"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
- 3. 회사가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

### 제6조(전환전 계약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)

이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"계약전 알릴의무", "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

무", "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", "사기에 의한 계약"조항은 전환후계약에도 계속되며 전환후계약의 최 대 재가입기간 만료시점까지 효력이 있습니다.

# 제7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